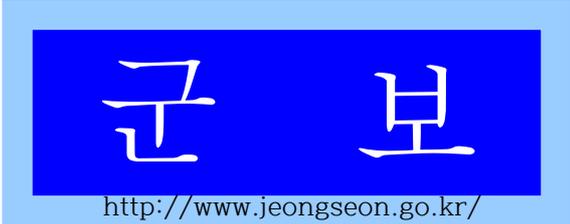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1호 2021. 11. 16. (화)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45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46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4
- 정선군 조례 제2847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14
- 정선군 조례 제2848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849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27
- 정선군 조례 제2850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근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35
- 정선군 조례 제2851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37

- 정선군 조례 제2852호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40
- 정선군 조례 제2853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47
- 정선군 조례 제2854호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54
- 정선군 조례 제2855호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56
- 정선군 조례 제2856호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59
- 정선군 조례 제2857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62
- 정선군 조례 제2858호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69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62호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73
- 정선군 규칙 제1363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8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조 례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 및 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5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을 둔다.

②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촉해지) 군수는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4.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 5.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협업 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군이 갖는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관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가. 정선군 정책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이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관으로 변경하고,
- 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발히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자문관 구성 기준 전문성 강화 및 구성인원 축소(제3조 구성)
- 다. 정책자문관 예산지원(자문료, 연구비, 수당, 여비 등)과 위탁운영 규정 신설(제5조 예산지원)
- 라. 정책자문관의 직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권리 명확화(제6조 권리)
- 마.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 신설(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 및 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6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2. 지원대상사업
-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4. 지원 및 선정절차
- 5. 수행 일정
-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교부제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무행정관

2. 복지과장

3.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

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별지 제1호서식 】

##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별지 제2호서식 】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sup>1)</sup>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정선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sup>1)</sup>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별지 제4호서식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 나. 관련 기존 조문 일제 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공모,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 (안 제3조 ~ 제6조)
- 나.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부기등기 등을 규정(안 제7조 ~ 제8조)
- 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규정(안 제9조)
- 라.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20조)
- 마.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관련 사항 규정(안 제21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 및 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7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 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정선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정선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정선군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비용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정선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 2.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 4. 정선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정선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정선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 2. 계약기간 및 금액
  -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당초 :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변경 : 정선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안 제3조)

다. 광고의 비용(안 제4조)

라.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안 제6조~제11조)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13조)

아. 위탁(안 제14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 및 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에서 의결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8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재임기간”을 “재임(再任)기간”으로,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각 분야의 전문 예술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6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공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공연·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 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을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모집”을 “공개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모집”을 “특별전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모집 및 위촉)”을 “(전형 및 위촉)”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법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중전의 제11조의2) 제2항제1호 중 “군”을 “국가나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우한 이웃”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u>리량 기능보유자로 한다.</u></p> <p>⑤ (생 략) <u>&lt;신 설&gt;</u></p>	<p><u>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공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u></p> <p><u>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p>
<p><u>제6조(모집 및 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한다.</u></p> <p>② 일반 <u>공개모집</u>의 경우 단원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p> <p>③ <u>특별모집</u>의 경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p> <p>1. ~ 3. (생 략)</p> <p>④ (생 략)</p>	<p><u>제7조(전형 및 위촉) ① -----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과 특별전형-----.</u></p> <p>② ---- <u>공개전형</u>-----.</p> <p>③ <u>특별전형</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7조(단원의 해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8조 · 제9조 (생 략)</p> <p><u>&lt;신 설&gt;</u></p>	<p><u>⑤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만 60세 이하로 한다.</u></p> <p>제8조(단원의 해촉)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그 밖에 법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9조 ·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p> <p>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③ 예술단의 공연 · 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형</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급여지급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단원에게 급여와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단원이 공연을 한 때에는 수당(출연료)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예술단의 공연·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가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성과금, 수당, 보상금,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 (생 략) 제11조의2(공연료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u>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p>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의2(공연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 행	개 정 안
<p>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p> <p>1. <u>군</u>이 주관하는 행사</p> <p>2. <u>불우한 이웃</u>이나 노약자,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p> <p>3. (생략)</p> <p>③ (생략)</p> <p>④ <u>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u></p> <p><u>제12조·제13조</u> (생략)</p>	<p>-----.</p> <p>1. <u>국가나 군</u>-----</p> <p>2. <u>사회·경제적 취약계층</u>-----</p> <p>-----</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u></p> <p><u>제13조·제14조</u>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p>

## □ 제안이유

- 가. 2020년 제3회(2020.10.15.) 및 2021년 제1회(2021.3.30.~04.02.)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결과 반영
- 나.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직무재검토, 전형위원 신설, 급여체계 변경 등 기존규정의 보완을 통하여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삭제 및 별도 조항 신설(안 제4조제7항 삭제 및 안 제11조 신설)
- 나. 지도위원의 자격조건 확대(안 제5조제4항)
- 다. 예술단원 채용에 다른 전형위원 신설(안 제6조)
- 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연령(안) 신설(안 제7조제5항)
- 마. 단원의 해촉사유 추가 신설(안 제8조제7항)
- 바. 급여지급체계 변경 및 위원 실비보상지급 기준 신설(안 제11조)
- 사. 예술단의 무료공연에 국가주관 행사 추가(안 제12조의2제2항제1호)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 및 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49호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기능) 목재문화체험장의 위치 및 기능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운영) ① 체험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5.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7. 혐오 및 유해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체험료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에 따르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한다.

③ 체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선군 관내로 둔 사람 또는 명예 정선군민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 구성원
7. 폐광지역 주민(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 단, 그 지역주민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또는 그 밖에 폐광지역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나. 제8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 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반환
-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때: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제13조(편의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2. 유아 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착유)
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체험장 운영 활성화)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회원제도 도입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체결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3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 [별표 1]

## 위치 및 기능

구 분	내 용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기 능	·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 목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시 설	· 목재 전시체험관, 목재 놀이터, 목공체험실(창고), 야외교육장
	· 무장애 데크경사로,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 [별표 2]

##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단위: 원)

구 분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목공예체험	성 인	5,000	개인 체험료의 100분의 70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어린이	5,000		
목재전시관	성 인	무료		
	어린이	무료		

## [비 고]

1. 목공체험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목재전시체험관, 목공체험실 등으로 한다.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나. 체험장 운영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9조)
- 다. 체험료 징수, 면제·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 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18조)
- 마.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3을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으로 다른 조례 개정(부칙 제2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 및 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0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이월액 및 이자수입은 정선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및 지원)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정선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정선군 장기미집행시설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의 폐지 전에 확정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매수 청구가 급감하였으며,
- 나. 당초 설치 목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이나 현재 정선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 다. 이에 본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 및 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1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p> <p>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2026</u> <u>년 12월 31일</u>-----.</p>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2호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를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2조 단서 중 “군외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 할” 을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이 조례에 의한 포상” 을 “포상” 으로, “구분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때에는 상패 및 그 외” 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로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
3.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
4. 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정선군 소속 공무원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
6. 그 밖에 공적이거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2.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2. 의회 또는 정선군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경우

제3조(중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정선군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위하여 정선군의회”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3인이상 5인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의회 포상조례</u></p> <p>제2조(포상대상) <u>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u></p> <p>제3조(포상의 종류) <u>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u></p> <p>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u>포상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감사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상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수여한다.</u></p> <p>②<u>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u></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의회 포상 조례</u></p> <p>제2조(포상대상) <u>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 -----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u></p> <p>제4조(포상의 종류) <u>포상----- 한다.</u></p> <p>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u>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u></p> <p>② ----- 하는 경우에는</p>

현 행	개 정 안
<p>및 그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p>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p>	<p>제6조(표창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
<p>1. <u>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u></p>	<p>1. <u>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u></p>
<p>2. <u>헌신적인 봉사로서 군정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u></p>	<p>2. <u>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u></p>
<p>&lt;신 설&gt;</p>	<p>3. <u>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u></p>
<p>&lt;신 설&gt;</p>	<p>4. <u>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정선군 소속 공무원</u></p>
<p>&lt;신 설&gt;</p>	<p>5. <u>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u></p>
<p>&lt;신 설&gt;</p>	<p>6. <u>그 밖에 공적이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p>	<p>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p>1. <u>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u></p>	<p>1. <u>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u></p>
<p>2. <u>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군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u></p>	<p>2. <u>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u></p>



현 행	개 정 안
<p>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 략)</p> <p>④ 위원회는 <u>재적의원</u>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재적위원</u> -----</p> <p>-----</p> <p>-.</p>

□ 제안이유

정선군의회 포상(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 및 확대하고, 포상 중 상장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여 포상업무를 신속 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반영
- 나. 포상(표창장, 감사장, 상장) 대상자 구체적 명시(안 제6조~제8조)
- 다. 상장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규정 신설(안 제9조)
- 라. 조례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2조~제9조의2)

제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3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전하게보육”을 “건전하게 보육”으로 한다.

제4조 중 “한다)제6조”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영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인·단체”를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운영하여 야”를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군수 의”를 “군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있 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이 정하는 바”를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을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행사비용
5. 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
6.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7. 영유아 보육을 위한 행사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제1항 중 “상황을연” 을 “상황을 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 고” 를 “보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제2조(정의) ----- -----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u>건전하게보육</u>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3조(책임) ① ----- ----- <u>건전하게 보육</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	<p>제4조(설치) ----- ---- <u>한다</u>) 제6조----- ----- ----- ----- -----.</p>
<p>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③ (생략)</p>	<p>제5조(구성) ① ----- ----- -----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p>	<p>제6조(기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사항을 심의한다.</p> <p>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5. (생략)</p> <p>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정선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u>법인·단체</u> 또는 정선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u>운영하여야</u>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p>	<p><u>제7조제2항</u> ----- -----.</p> <p>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영 제10조의2제1항</u> ----- ----- ----- -----</p> <p>5. (현행과 같음)</p> <p>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 ----- ----- ----- <u>법인·단체</u> ----- ----- ----- ----- ----- <u>운영하여야</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p>

현 행	개 정 안
<p>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u>군수</u>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 ----- <u>군수</u>의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⑤ ----- ----- ----- <u>있는</u> ----- ----- -----.</p>
<p>⑥·⑦ (생략)</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20조(비용의 보조) ① <u>군수</u>는 <u>별</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u>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u>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20조(비용의 보조) ----- ----- <u>별</u> <u>제36조 및 영 제24조</u>----- ----- <u>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u> <u>부 또는 일부를</u> ---.</p>
<p>&lt;신 설&gt;</p>	<p>1. <u>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u> <u>따른 비용</u></p>
<p>&lt;신 설&gt;</p>	<p>2. <u>어린이집 유지·운영, 기능보강</u> <u>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u></p>
<p>&lt;신 설&gt;</p>	<p>3. <u>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u></p>
<p>&lt;신 설&gt;</p>	<p>4. <u>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u> <u>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행사비</u> <u>용</u></p>
<p>&lt;신 설&gt;</p>	<p>5. <u>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u></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p> <p>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u>상황을</u>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u>보고</u>하여야 한다.</p>	<p>6.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7. 영유아 보육을 위한 행사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p> <p>제21조(지도감독) ① ----- ----- <u>상황</u> <u>을 연</u> ----- ----- -. ② ----- ----- ----- <u>보고</u>----- ---.</p>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및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운영 보조 지원사업 명시(안 제20조)
- 나. 조례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 정비

제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4호

###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 및 보험 가입(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유공자 포상(안 제6조)

제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5호

###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정선군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③ 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안에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정선군 명의로 취득 및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 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안 제4조)
- 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관리 및 처분(안 제5조~제7조)
- 라. 수익금 운용 및 관리(안 제8조)
- 마. 시설물의 환수(안 제9조)

제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6호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정선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정선군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전담인력,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대상 시설 지정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전담인력 운영(안 제6조)
- 라.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안 제7조)
- 마.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8조)

제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7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 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정선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분양주택”을 “분양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임대사업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의한”을 “의한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비용”을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지 보수비용 및”을 “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 2.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보수
- 3. 노후 담장 교체 및 보수

- 5.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설치(보수 포함)
- 6.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
- 7.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 8.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 9.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공급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 10.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유지보수(단, 신규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은 제외한다)
- 11.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
- 12.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비용
- 1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를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조제1항제5호”를 “제5조제1항제13호”로, “비용은”을 “공용부분의 보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지원대상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p> <p>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p> <p>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p> <p>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 ----- ----- -----.</p> <p><u>&lt;삭 제&gt;</u></p> <p>제2장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대상단지 등) ①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            도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10세대            이상의 <u>분양주택</u>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            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부터 적            용한다. &lt;단서신설 2009.10.20.&gt;</p> <p>②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기            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lt;단서신설 2009.10.20.&gt;</p>	<p>제4조(대상단지 등) ① -----            -----            ----- <u>분양공</u>  <u>동주택</u>----- . -----            -----            ----- . -----</p> <p>②-----            -----            ----- .-----  <u>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u>-----            ----- <u>의한 보안등 교체 및 보</u>  <u>수비용, 보안등</u> --- . <u>&lt;후단 삭제&gt;</u></p>
<p>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지원대상            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            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u>제비용</u>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            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            물에 한한다.</p> <p>1. <u>부대시설</u></p> <p>2. <u>어린이 놀이터</u></p> <p>3. <u>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u>            (단,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을 제</p>	<p>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            -----            -----            ----- <u>비용</u> ----- .            -----            ----- .</p> <p>1. <u>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유지</u>  <u>보수</u></p> <p>2. <u>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보수</u></p> <p>3. <u>노후 담장 교체 및 보수</u></p>

현 행	개 정 안
<p><u>외한다)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u></p> <p>4. <u>보안등 유지 보수비용 및 전기요금</u></p> <p>5. <u>그 밖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p>	<p>4. ---- <u>교체 및 보수비용, 보안등</u>  -----</p> <p>5. <u>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설치(보수 포함)</u></p> <p>6. <u>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u></p> <p>7. <u>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u></p> <p>8. <u>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u></p> <p>9. <u>단지내 상·하수도, 가스공급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u></p> <p>10. <u>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유지보수(단, 신규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은 제외한다)</u></p> <p>11. <u>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유지·보수</u></p> <p>12. <u>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비용</u></p> <p>13. <u>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u></p>

현 행	개 정 안
<p>②·③ (생략)</p> <p>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u>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u>군수는 법 제34조제3호</u>----- ----- ----- -----.</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지원금액 등) ①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서, <u>3천만원</u> 이하(단,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금액 등) ①----- ----- <u>4천만원</u> ----- ----- -----.</p>
<p>②·③ (생략)</p> <p>④<u>제5조제1항제5호</u>에 따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년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lt;본항신설 2010.11.03.&gt;.</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5조제1항제13호</u>----- ----- <u>공용부</u> <u>분의 보수</u>는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정선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업무 확대(안 제5조)
- 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액 상향(안 제6조)

제276회 정선군의회(2021. 10. 28.)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58호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로컬푸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생산 지원)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5.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6. 여성·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로컬푸드 가공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하 “전문판매장 등”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농가 및 운영자 등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판매장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에 따른 기준, 절차, 지원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로컬푸드 소비촉진) 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농업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안 제3조)
- 다.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안 제4조, 제5조)
- 라. 로컬푸드 생산, 가공, 전문판매장 등 설치 및 소비촉진 지원(안 제6조~제9조)
- 마.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제11조)

# 규 칙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2호

##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료 및 연구비) 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관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및 연구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료와 연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비는 자문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4조(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정책자문관 자문료

구 분	지급금액(한도액)
자문료 (대면, 서면, 통신, 화상 등)	회당 200천원
연구비	22,000천원

※ 정선군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따라 편성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서

제목				
자문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E-mail	
	전화번호			
자문사항				

-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자 문 내 용				
제목				
자문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E-mail	
	전화번호			
자문사항				
※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				
의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책자문관 ○ ○ ○ (서명)</p> <p>정선군수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자문료(연구비) 청구서

과제명					
자문일	20 . . . .	제출완료일	20 . . . .		
자문부서					
정책자문관 성명					
청구금액	금 액	금 원(₩ )			
	내 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 -	예금주		연락처	
자문의견	별첨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제안이유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정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서식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나. 자문료 및 연구비 지급액 및 신청 절차 규정(안 제3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3.)에서 의결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3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급여지급 등)” 을 “(급여 및 호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상임단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8를 따른다. 다만,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는 별표 9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 ② 단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적용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 11에 따른다.

- 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출연료)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 을 “제7조제2항”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 를 “전형위원” 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모집방법 및 채점기준)” 을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으  
 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전단 중 “제11조제1항” 을 “제12조제1항” 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11조의2” 를 “제12조의2” 로 한다.  
 별표 1, 2, 3, 4, 6,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5를 삭제한다.  
 별표 8, 9, 10,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단원의 구성 및 정원

구 분	구 성					비 고
	계	소리	예능	기악	기타	
계	50	18	18	6	8	
연출감독	1				1	
작 가	1				1	
지도위원	4				4	
안 무 가	1				1	
단 무 장	1				1	
수석단원	3	1	1	1		
차석단원	3	1	1	1		
평 단 원	16	4	8	4		
비상임단원	20	12	8			

[별표 2]

## 단원의 수당

□ 출연료 및 연습비

명 예 단 원		비상임단원		단원(공통)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연습비
200,000원	180,000원	150,000원	120,000	60,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3년 이상, 3년 미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습비는 명예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연습에 참여 할 경우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3]

##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적 용 분 야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작 품 료	어문저작물의 희곡 각색료	작품당	1,000~5,000	
	관현악합주곡 작곡	1곡(30분 내외)	1,000~5,000	
	독·중주곡 작곡	10분 내외	500~3,000	
	국악 편곡	10분 내외	500~3,000	
	무용 창작	10분 내외	500~2,000	
	무용 편곡	1작품	500~2,000	
객 원 출 연 료	특별출연 A급	1회	600~1,500	
	특별출연 B급	1회	300~600	
	특별출연 C급	1회	150~300	
	일반직원출연 및 연습	1일	50~120	
	※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공연보조	도안, 조명, 음향기사	1회	300~1,000	
	소품 운송, 홍보 등	1회	50~200	
	사진 촬영 등	1회	300~1,000	
기 타	원작 사용료	작품당	1,000~10,000	

비고: 객원 출연료 보상 기준

- A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B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 C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장학생
- 일반 객원 출연 및 연습: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미만인 사람

[별표 4]

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연출감독 · 작가 · 지도위원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안무가 · 단무장 · 수석 · 차석 · 평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상임단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별표 6]

## 관람료 기준

구 분	1회당 기준 시간(분)	
	60분 미만	60분 이상
소리,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극, 국악 2개 부문 공연	10,000원 ~ 15,000원	20,000원
정선아리랑극 공연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5,000원	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10,000원

## 비고

1.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5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2.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경우 2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3. 상기 1과 2의 할인 사유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선아리랑극 공연의 경우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

[별표 7]

## 공연료 기준

구 분	공 연 료	비 고
독창/독주	200,000원 ~ 400,000원	-
5인 이상 10인 미만	1,000,000원 ~ 2,000,000원	연주자 5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2,000,000원 ~ 3,000,000원	“
20인 이상 30인 미만	3,000,000원 ~ 4,000,000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4,000,000원 ~ 5,000,000원	“

## 비고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1일 이상은 공연료와 숙식비 등 별도 협의한다.

[별표 8]

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상임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

[별표 9]

##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

대 상	연 봉 기 준	비 고
연출감독	40,000,000원 ~ 60,000,000원	
작 가	35,000,000원 ~ 50,000,000원	
안 무 가	28,000,000원 ~ 40,000,000원	

[별표 10]

## 경력환산기준표

경력기준	적용범위
국·공립 예술단에서 동일분야(단원)로 근무한 경력	상임 100% 비상임 50%
군복무 경력	100%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100%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일분야 활동경력	50%

[별표 11]

상임단원제수당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비고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책수당	수석·단무장 : 월 20만원 차석 : 월10만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급여지급 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급여 지급에 대한 상임단원의 연봉, 단원의 수당(출연료), 보상금, 여비 및 상임단원의 성과금의 지급기준 등은 각각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성과금은 직책별 구분에 따른 성과금에 전년도 근무평정표와 단원고과기록표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지급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5조(급여 및 호봉) ① 상임단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8를 따른다. 다만,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는 별표 9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p> <p>② 단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적용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p> <p>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 11에 따른다.</p> <p>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p> <p>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출연료)은 별표 2에 따른다.</p> <p>제7조(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p>

현행	개정안
<p>제6조(모집방법 및 채점기준) 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일반 공개 모집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p> <p>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의 채점기준은 <u>운영위원회</u>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p> <p>제7조 (생략)</p> <p>제8조(공연관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받은 관람료는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p> <p>제9조(공연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공연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10조 (생략)</p>	<p><u>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u></p> <p>제8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 -- - <u>제7조제2항</u>----- ----- 1. 2. (현행과 같음)</p> <p>② ----- ----- <u>전형위원</u>----- -----</p> <p>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p> <p>제10조(공연관람) -- <u>제12조제1항</u>----- ----- -----</p> <p>제11조(공연료의 징수) -- <u>제12조의2</u>----- -----</p> <p>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 제안이유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리랑 예술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급여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단원의 구성, 급여 및 호봉, 수당 및 여비규정,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적용(안 제5조~안 제7조)
- 나. 전형위원 신설에 따른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안 마련(안 제8조)
-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